재 결 요 약 서

<table>
<tr><td>사 건 명</td><td>화물선 백두호 · 자동차운반선 바다호 충돌·좌초사건
(지방해심 제2026-002호)</td></tr>
<tr><td>해양사고관련자
(직책, 해기면허)</td><td>1. 김백산(백두호 선장, 2급항해사)
2. 이대양(바다호 선장, 1급항해사)</td></tr>
<tr><td>판 시 사 항</td><td>1. 판시요지
가. 항법상 지위 및 적용항법 검토
나. 악천후 대응 및 항해 판단
다. 선박 설비 고장과 선장의 직무상 과실 여부
라. 양 선박의 충돌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 여부
마. 정박 당직 경계 및 주기관 사용 준비 여부

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70조, 제83조, 제99조, 제103조
- 「선박안전법」 제15조</td></tr>
<tr><td>원인판단 주제어</td><td>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항행 중인 조종불능선, 정박선, 악천후 대응, 적절한 경계, 안전거리 확보, VHF 청취, 충돌</td></tr>
<tr><td>사 건 개 요</td><td>□ 관련선박 :
<table><tr><th>선 명</th><th>용 도</th><th>총톤수/길이
(GT/M)</th><th>선박소유자/
선적항</th><th>피 해</th></tr><tr><td>백두호</td><td>화물선</td><td>4,000/85.00</td><td>C SHIPPING/
제주시</td><td>- 우현 선미
외판</td></tr><tr><td>바다호</td><td>자동차 운반선</td><td>3,500/80.00</td><td>F SHIPPING/
Panama City</td><td>- 우현 닻줄
절단, 연료유
탱크 파공 등</td></tr></table>□ 일 시 : 2026년 04월 18일 00시 50분경
□ 장 소 : 대한항 외항 N-3 대기정박지 부근 해상
□ 사고경위
대한항 외항 정박지에서 정박 중이던 백두호가 기상악화로 주묘가 발생하자 양묘 후 외해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재투묘하였고, 이후 윈드라스 클러치 이상으로 주기관을 사용하여 닻을</td></tr>
</table>

	끌며 이동하던 중 주기관이 정지하여 강한 남동풍에 압류되다가 인근에 정박 중이던 바다호와 충돌하였으며, 충돌 후 바다호의 닻줄이 절단되어 주묘하다가 인근 해안에 좌초하여 연료유가 유출된 사건
주 문	이 충돌사건은 기상 악화로 백두호가 윈드라스 이상으로 양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사용하여 닻을 끌면서 이동하던 중 주기관이 정지되어 조종능력을 상실한 채 강풍에 압류되어 정박 중인 바다호와 충돌한 사건이나 바다호가 적절한 정박당직과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이 사건 충돌로 바다호의 우현 닻줄이 절단되어 좌현 닻만으로 충분한 파주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묘되어 대한항 인근 해안의 저수심 해역에 좌초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료유가 유출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김백산의 2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이대양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참 고 사 항	
교 훈	1. 악천후 예보 확인 및 위험 판단 후 안전수역 확보 2. 주묘 발생 시 주변 선박과의 안전거리 확보 3. 악천후 대비 양묘설비의 작동상태 사전 점검 4. 비상상황 대비 주기관 작동상태 확인 및 즉시 사용을 위한 준비 5. 적절한 정박당직 및 경계 유지 6. VHF 및 VTS를 통한 주변 선박 동정 확인 유지 7.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충돌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 실행 6. 악천후 및 각종 설비 고장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 마련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